

교원내부검무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학제간 교육 및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 내부검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'교원 내부검무'(이하 '검무'라 한다)라 함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원 소속 학부·학과·전공(이하 '학과'라 한다)외에 교내 타 학과의 교육 및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.
2. '검무교원'이라 함은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검무 임용된 전임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검무 사유)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 전임교원을 검무 임용할 수 있다.

1. 검무를 필요로 하는 학과(이하 '검무 학과'라 한다)의 요청이 있는 경우
2. 본교의 운영상 교육·연구과제 등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검무임용 절차) 검무임용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제3조 제1호의 경우 검무 학과는 원 소속 대학장 및 학과장의 검무 동의서를 첨부하여 검무 학과의 검무 추천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검무 임용한다.
2. 제3조 제1호 이외는 교무처장이 원 소속 학과장 및 검무 학과장과 협의하고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검무 임용한다.

제5조(검무 임용기간) 검무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검무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2. 검무 임용기간 중이라도 검무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검무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검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.

제6조(권리 및 의무) 검무교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

1. 검무교원은 원 소속 학과에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인사 등 제반사항은 원 소속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원 소속 학과와 검무 학과 간에 상호 합의한 경우 별도의 직무사항을 따로 정하여 수행

3-2-24~2 제3편 행 정

할 수 있다.

2. 겸무교원은 겸무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이나 학술활동 등 필요한 경우 원 소속 학과와 겸무 학과를 명기할 수 있다.

제7조(겸무교원의 직무) 겸무교원이 겸무학과에서 수행할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할 수 있다.

1. 강의
2. 연구
3. 학생지도
4. 논문지도
5. 논문심사
6. 행사참여
7. 겸무학과 교수회의 참석(교원인사, 교육과정(명칭변경 2015.08.29.)편성, 내규제정 등)
8. 겸무학과 교원의 업적평가회의 참여
9. 기타 위 사항에 부수되는 필요한 업무

제8조(겸무교원의 업적평가) 겸무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원 소속 학과에서 실시한다.

제9조(겸무교원에 대한 행정지원) 겸무교원에 대한 연구 공간, 연구비, 연구년제, 조교 등의 행정지원은 원 소속 학과에서 담당하며, 겸무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겸무 학과에서 지원한다.

제10조(겸무교원에 대한 처분금지) 겸무교원에 대하여 겸무를 사유로 업적평가, 보수, 인사 등에서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.

제11조(적용) 본교의 겸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제1호)

교원 내부겸무 추천서

아래 전임교원을 _____대학 _____학부(과, 전공)의
겸무교원으로 추천합니다.

원 소속 학과				겸무 학과	
대 학	학부(과,전공)	직 위	성 명	대 학	학부(과,전공)
겸무사유					
겸무업무					
겸무기간					

년 월 일

겸무 학과

학부(과)장 _____ (인)

대학(원)장 _____ (인)

가천대학교 총장 귀하

3-2-24~4 제3편 행정

(별지서식 제2호)

교원 내부검무 동의서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

상기인을 대학 학부(과, 전공)로의 내부검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_____ (인)

학부(과)장 _____ (인)

대학(원)장 _____ (인)

가천대학교 총장 귀하